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지급액 인상 등 》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7호)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9호)
- 용혜인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7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7
-----------------	---

1. 농어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 지급 (안 제41호 박정의원안)	7
2.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지급액 인상 등 (안 제147호 전진숙의원안, 안 제509호 박성준의원안, 안 제527호 용혜인의원안)	13

< 참고자료 >

1.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또는 아동수당 형태추가 지급 현황	37
--	----

I. 개요

1. 박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4. 5. 30.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2.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33인
- (2) 제 안 일 : 2024. 6. 5.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3.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3.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20인
- (2) 제 안 일 : 2024. 6. 17.
- (3) 회 부 일 : 2024. 6. 18.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2018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함.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이며, 양육비 부담은 8세 이상인 학령기로 접어들수록 커짐.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아동수당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함.

OECD 아동수당 지급국가 32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월 약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는 초저출생 대책이 되려면 선진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서,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다.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Ⅱ. 검토의견

1. 농어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

(박정의원안 제4조제6항 신설)

- 개정안은 아동의 주소지가 농촌 또는 어촌 지역인 경우 기존 아동수당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1)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조 7,946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²⁾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부모급여(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 자료 : 보건복지부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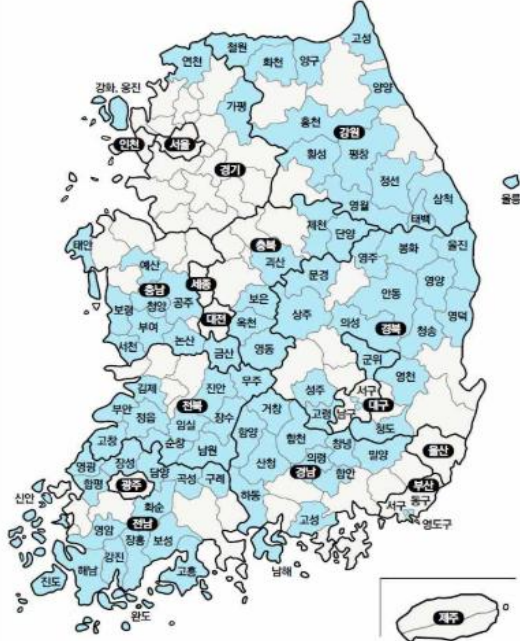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5개 자치구를 제외한 84개 시·군 지역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중 대부분의 군 지역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였으며³⁾, 2022년 기준 소멸고위험 지역 45곳은 모두 군지역임.

2)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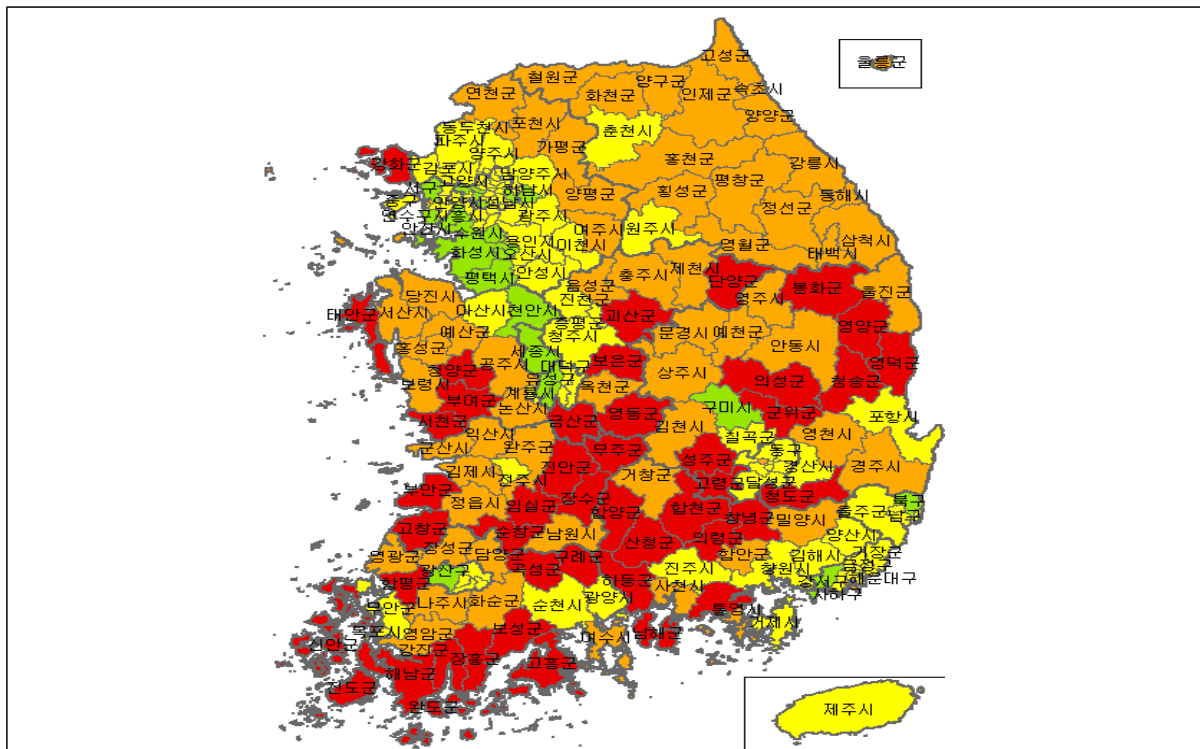
3) 이상호,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2022. 4, 한국고용정보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양군 합천군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3. 18.)

< 지역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맵 (2022년 3월 기준)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앞의 자료

□ 개정안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전북 순창군, 경남 의령시, 전남 강진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 또는 다자녀·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존 아동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월 5~60만원의 추가 아동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기도 함.

※ [참고 1]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또는 아동수당 형태의 추가 지급 현황

□ 다만,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원의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서 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 지역의 수급권자 수에 대한 구체적 통계 정보가 부재하고, 추가 지급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추가 지급액 규모에 대한 예상이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농어촌 지역에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사례로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의 영유아(최대 24~8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있음.

<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8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
		36~47	129천원	36~85	100
		48~85	100천원		

*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지자체는 「아동수당법」의 별도 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례로 추가 지급 가능하며, 동일 시·군·구 내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내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임.

2.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지급액 인상 등

(전진숙·박성준·용혜인 의원안 제4조제1항 등)

-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행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전진숙의원안은 20만원, 박성준의원안은 50만원, 용혜인의원안은 30만원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각각의 안 제4조제1항).
- 그리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되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모급여)의 경우, 박성준의원안은 이를 삭제한 반면, 용혜인의원안은 추가지급이 아닌 동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5항).
- 그 외 용혜인의원안에서는 14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등도 담고 있음.

현 행	전진숙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18세----- -----20만원-----.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18세----- -----50만원-----.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18세----- -----30만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 ----- ----- ----- ----- ----- 지급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삭 제) ③ (생 략)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현행과 같음)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현행과 같음)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 ----- ----- ----- ----- ----- ----- ----- ----- ----. 다만, 14세 이상 아동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	---	--

[illegible]

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 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 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 다.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 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 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 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 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 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 동이용할 수 있 다.	⑤ ----- ----- ----- ----- ----- <u>18세</u> ----- ----- ----- ----- ----- -----.	⑤ ----- ----- ----- ----- ----- <u>18세</u> ----- ----- ----- ----- ----- -----.	⑤ ----- ----- ----- ----- ----- <u>18세</u> ----- ----- -----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수당의	제9조(아동수당의	제9조(아동수당의	제9조(아동수당의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			
급을 결정한 아			
동에 대하여 아			
동수당의 지급			
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u>8세</u> 생일이 도			
래하는 달의 전	<u>18세</u>	<u>18세</u>	<u>18세</u>
달까지 매월 정			
기적으로 지급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			
동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수			
급아동이 「아			
동복지법」 제5			
2조 제1항 제1호			
의 아동양육시			
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			
활가정에서 보			
호조치되고 있			
는 경우 등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같은 법 제4			
2조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따	-----	-----	-----
라 개설된 수급	-----	-----	-----
아동 명의의 계	-----	-----	-----
좌에 입금하여	-----	-----	-----
지급할 수 있	-----	-----	-----
다.	-----	-----	-----
--,	--,	--,	--,
② ~ ⑤ (생	② ~ ⑤ (현행	② ~ ⑤ (현행	② ~ ⑤ (현행
략)	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제12조(수급아동	제12조(수급아동	제12조(수급아동	제12조(수급아동
의 보호를 위한	의 보호를 위한	의 보호를 위한	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보호자의 변경)	보호자의 변경)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 -----
장·특별자치도			-----
지사·시장·군			-----
수·구청장은			-----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로			-----
서 수급아동의			-----
보호를 위하여			-----
필요한 경우에			-----
는 직접 또는			-----
그 보호자등의			-----
신청에 따라 다			-----
른 보호자에게			-----
아동수당을 지			-----
급하거나 관리			-----
하도록 할 수			-----
있다.			-----.

1. · 2.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
동이 「청소
년복지 지원
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위 기 청 소 년
혹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 소 년 으 로
각 목에 해당
되어 보호자
변경의 필요
가 인정되는
경우

가. 아동이
보 호 자 와
실 질 적 인
생계 및 주
거를 같이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아동이
가정 내 갈
등 · 학대 ·
폭 력 · 방
임, 가정해
체, 가출

			등의 사유 로 보호자 로부터 건 강한 성장 과 발달을 위한 경제 적 지원을 받기 어려 운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 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 음)
제13조(아동수당 의 지급 정지)	제13조(아동수당 의 지급 정지)	제13조(아동수당 의 지급 정지)	제13조(아동수당 의 지급 정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 음)	① (현행과 같 음)	① (현행과 같 음)
②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 호자가 제7조제 1항에 따른 서 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 를 제출한 경 우, 조사·질문 을 거부·방해	②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 음)	② ----- ----- ----- ----- 수급아동 본인 (아동수당을 직 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 의 보호자----- ----- ----- -----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신고)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 ①

----- 수급아동
본인(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
아동의 보호자-----

-----.

물」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 자가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 ----- ----- ----- ----- ----- -----
			1. ~ 4. (현행 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조 7,946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 * 자료 : 보건복지부
-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⁵⁾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 * 자료 : 보건복지부
-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첫째,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행 10만원인 아동수당

5)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지급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전진숙의원안은 20만원, 박성준의원안은 50만원, 용혜인의원안은 30만원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교 >

	현 행	전진숙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월 지급액	1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급연령의 경우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으로 확대된데 비해,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동일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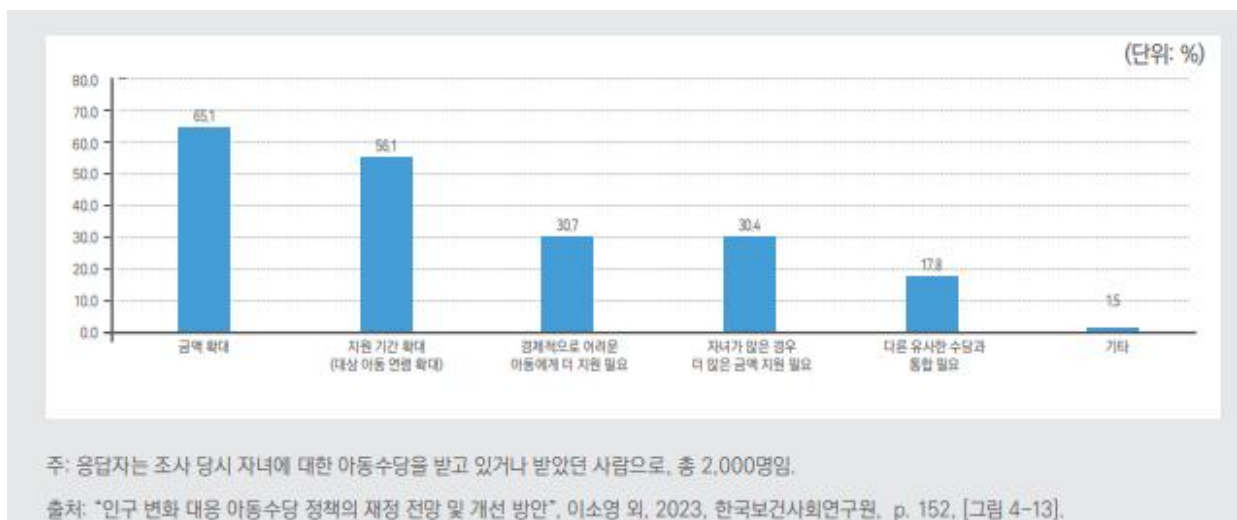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녀 관련 지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사교육비 포함	60.6	78.5	91.9
사교육비 제외	51.7	35.8	4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269~p.2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⁶⁾.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



6) 이소영,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4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 27.

-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9개국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7개국임.

< OECD 아동수당 지급 국가의 연령 구분 >

지급연령	국가수	국가명
8세 미만	1	한국
15세 이하	8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17세 이하	18	핀란드(16세),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
18세 이상	4	일본(18세), 에스토니아(18세), 프랑스(19세), 체코(25세)
합계	31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6만 5,000원, 독일은 월 약 37만 1,000원, 영국은 약 18만원 등을 지급 중임.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

국 가	지 급 액	원화 환산액 (‘24.6월 환율기준)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65,000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71,000원
영 국	(첫째) 주 25.6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6.95 파운드	주 45,000원 (4주: 180,000원) 주 29,800원 (4주: 119,200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583,000원 월 492,000원
일 본	(0~2세) 첫째·둘째 15,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3세~고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131,300원, 월 262,300원 월 87,500원, 월 262,300원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아동수당 금액 상향 조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3건의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 3건의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5년간 (2025~2029년)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전진숙의원안은 60조 1,356억원(연평균 12조 271억원), 박성준의원안은 147조 3,000억원(연평균 29조 4,000억원), 용혜인의원안은 88조 1,000억원(연평균 17조 6,000억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조원)

구분	전진숙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용혜인의원안	
	합계	연평균	합계	연평균	합계	연평균
합계	60.1	12.0	147.3	29.4	88.1	17.6
- 국비	45.4	9.1	112.7	22.5	66.5	13.3
- 지방비	14.7	2.9	34.5	6.9	21.5	4.3

-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0~17세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용혜인의원안 제4조제5항의 '추가'지급 조항삭제로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되, 24년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 제도설계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둘째, 부모급여(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되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와 관련하여, 박성준의원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50만원)을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용혜인 의원안은 아동수당 외 부모급여의 추가지급 방식이 아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 지급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모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

		현 행	전진숙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부 모 급 여	0세	추가 100만원	추가 100만원	-	100만원
	1세	추가 50만원	추가 50만원	-	50만원

□ 박성준의원안과 용혜인의원안은 아동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면서 부모급여를 폐지하거나 부모급여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 지원의 영아기 편중 문제⁷⁾를 해소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부모급여 외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자녀에게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300만원이 지급⁸⁾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출생 초기에 지급되고 있는바, 두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이러한 편중

7)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어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중인 상황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박선권,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제199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10.

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영아기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약 8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1세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정도 >

구분		월평균 비용	비용부담 정도					4점 평균
		금액 (만원)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정도	전체	85.05	8.5	11.9	48.4	31.2	100.0	3.02
	0~11개월	99.32	8.7	13.0	47.6	30.8	100.0	3.00
	12~23개월	75.13	8.4	11.1	49.0	31.5	100.0	3.04
육아용품 구입비 부담정도	전체	47.13	4.0	14.6	55.9	25.5	100.0	3.03
	0~11개월	55.71	4.8	17.3	54.8	23.1	100.0	2.96
	12~23개월	41.15	3.4	12.8	56.7	27.2	100.0	3.08

주: 4점 평균은 '전혀 부담 안됨' 1점 ~ '매우 부담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21),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조사

- 아울러, 부모급여는 ① 가정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②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보육료(바우처)를 지원하되, 부모급여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박성준의원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시 2025년 0세 기준 부모급여 지원액 50만원 보다 큰 부모보육료(바우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모급여 폐지에 따른 예산 부족 현황 >

2024년 부모급여			2025년 부모급여(법안 시행시)			
이용구분	구분	0세	이용구분	구분	0세	바우처 부족액
가정양육 (현금지급)	부모급여 (현금)	월 100만원	가정양육 (현금지급)	부모급여 (현금)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부모)	보육료 바우처 (0세반, 54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부모)	보육료 바우처 (0세반, 54만원)	4만원
	부모급여 (차액)	월 46만원		부모급여 (차액)	0원	

자료: 보건복지부

□ 셋째, 용혜인의원안에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 단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임.

현행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아동수당의 수혜자는 아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의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모두 18세 이상으로 그 연령을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연령 설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청구)하는 국가 현황 >

국가	직접청구 가능나이	주요 내용
체코	18세이상	-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해당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함
이탈리아	18세이상	- 18세 이상은 본인이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	18세이상	- 18세 이상의 성년 아동(adult children)은 가족수당을 직접 지급받도록 청구할 수 있음(고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직접 청구 불가)
폴란드	18세 이상	- 18세 이상이고 학업중에 있으며 부모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예: 부모의 사망) 아동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음
포르투갈	18세 이상	- 18세 이상은 직접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주: 체코 외 다른 4개국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17세 이하이나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22~25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가능

자료 :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연구(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그 외, 용혜인의원안의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요건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현행 「아동수당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호자(보호자의 대리인 포함)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⁹⁾.

○ 「아동수당법」 상 보호자 변경 요건

-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상 보호자 변경 요건

- 지자체장이 수급아동을 보호조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입양)한 경우
- 재학대 우려 등으로 수급아동을 일시 보호조치한 경우
-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보호자의 성폭·행실 불량, 마약 중독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가 현저히 부적절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9) 「아동수당법」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

□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와 실질적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 내 갈등 및 학대 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호자 변경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보호자의 변경 요건에 추가하고 있는데, 명백한 조치 또는 수용 사실이 아닌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원 확대에 재정 소요가 크게 수반될 것이므로 타 양육제도와 관계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장려정책이 실시 중으로 아동수당 확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구 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원 확대는 재정 소요가 크게 수반되므로 타 양육제도와 관계,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①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지속 확대 중임 ②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는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바, 타 양육지원 제도와 관계,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성, 자원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규모 현금성 급여 지원 중이며, 첫만남 이용권 도입, 부모급여 확대 등 출산 장려를 위한 파격적인 아동 지원 既 실시 중

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폭·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구 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아동수당 대상·급여 확대시 막대한 재원 소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 - 현금성 지원 중심 출산장려책은 과도한 비용 발생 및 실패 가능성 높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
행정안전부	○ 아동수당 확대는 추가 재원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아동수당은 도입 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 최소보장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 ^(19년)15.1조 → ^(23년)20.1조 / 연평균 7.3% 증가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1】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또는 아동수당 형태추가 지급 현황
--------------	---

① 주요 지자체 아동수당 유형 지급현황

구분 (사업명)		중앙정부 사업 (아동수당)	전북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인천광역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경남 의령시 (영유아 양육수당, 다자녀가정 토타수당)		전남 강진군 (육아수당)
대상자		만8세미만 아동(0~7세)	만 2세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7~17세 지원은 다자녀 대상 - 2~6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 - 7~17세: 다자녀(두 자녀 이상)	만 1세이상 만 18세까지 아동		다자녀 가정 만0세이상 만18세 까지(7세 제외)		만7세미만 아동(0~6세)
지원조건			-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순창군에 보호자와 함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천사지원금) 인천에 보호자와 함께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3년생부터~ - (아이꿈수당) 거주기간 제한 없음, 16년생부터~		- (영유아 양육수당) 셋이상 다자녀 가정의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토타수당)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필요		- 강진군에 보호자와 함께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10만원	10만원	천사지원금 (1~7세)	1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0~7세 셋째아 이상)	30만원	60만원
				아이꿈수당 (8~18세)	15만원	다자녀가정 토타수당(바우처) (8~18세)	10만원	
연령별 지 원	0세	10만원				30만원(다자녀)		60만원
	1세	10만원		10만원		30만원(다자녀)		60만원
	2세	10만원	10만원	10만원		30만원(다자녀)		60만원
	3~6세	10만원	10만원	10만원		30만원(다자녀)		60만원
	7세	10만원	10만원	10만원		-		
	8~18세		10만원(~17세)	'16~'19 5만원	'20~'23 10만원	'24~ 15만원	10만원(다자녀)	

구분 (사업명)	중앙정부 사업 (아동수당)	전북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인천광역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경남 의령시 (영유아 양육수당,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전남 강진군 (육아수당)
지급방식	현금 (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으로 지급가능)	지역화폐(바우처)	지역화폐(바우처)	현금, 지역화폐(바우처)	지역화폐(바우처)
전달체계 (지원방식)	보건복지부 →시도 → 시군구	읍면동 신청 접수→ 군 결정 및 지급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군·구 지급	읍면동 신청 접수→ 시 결정 및 지급	읍면동 신청 접수→ 군 결정 및 지급
재원	국비 + 지방비	지방비 100%	지방비 100%	지방비 100%	지방비 100%
시행년도	'18년	'23년	천사지원금 '24년 아이꿈수당 [2024년 9월 시행]	영유아 양육수당 '09년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24년	'22년

자료: 보건복지부

②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아동수당형태) 지급현황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조례수립 여부	지원근거
인천	옹진군	다자녀양육비	현금	매월	1~4세	월 20만원	○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괴산군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지원	현금	매월	6세 미만	월 5만원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단양군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	현금	매월	만5세 이하의 셋째이상 자녀	만0세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세-5세 158천원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김제시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현금	매월	셋째아 이상 60개월 이하	월 10만원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육아수당	지역화폐 상품권	매월	보호자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59개월 이하 영유아	월 10만원	○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역상품권	매월	아동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 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중 - 2 ~ 6세 : 모든 아동 - 7~17세 : 다자녀(두 자녀 이상),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월 10만원	○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강진군	강진군 육아수당	모바일강진 사랑상품권	매월 25일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22.1.1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월60만원	○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조례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조례수립 여부	지원근거
	신안군	햇빛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상·하반 기 각1회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아동	1회당 40만원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경남	의령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현금	매월	0세~취학전	셋째 이상 월 30만원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바우처	매월	8세~18세	월 10만원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하동군	영유아 양육수당	현금	매월	6세 미만	둘째 이상 월 10만원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금	매월 10일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월 20만원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거창군	양육지원금	현금	매월	첫째,둘째:~20개월 셋째 이후:~60개월	월 30만원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창녕군	아동양육수당	현금	매월	셋째이상 자녀 중 5세 이하 (5세에 이르는 해당연도까지 지원)	셋째 이상 월 20만원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자료: 보건복지부